

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1. 4. 24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4월 9일 이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4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46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
제1차(2001. 4. 23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심평수)

가. 제안이유

전국 보건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이 각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비해 부족하여 인원충원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미배치 지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료인에게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한의사 등 의료인 미배치시 진료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함.(안 제2조, 제3조)
- 업무대행의 절차 및 계약,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
-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 되는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윤순성)

-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업무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
- 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12조(목적)에서 “지역보건법 제24조” 다음에 “제2항”과 “동법시행령 제22조” 다음에 “제2항”을 삽입하여야 합법하다고 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4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
고성읍 위원장외 5인 제출

나. 수정이유

○ 동조례와 관련한 법령을 표기함에 있어서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다. 수정주요골자

○ 조례제정 목적을 근거 법령의 항까지 명확히 표기함(안제1조)
○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그 시기를 명확히 함(안 제5조)

7. 심사결과 : 일부 수정의결(만장일치)

8. 기타사항 : 없음

- ※ 첨부 : 1. 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2. 수정안 대비표

이천시보건소지역보건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

이천시보건소지역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제1조중 “제24조”를 “제24조제2항”으로 하고, “제22조”를 “제22조제2항”으로 한다.
- 안제5조제1항중 “경우” 다음 “진료”앞에 “사전에”를 삽입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24조제2항</u> ----- <u>제22조제2항의</u> ----- -----.
제5조(업무대행 절차)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진료업무대행에 필요성 및 업무대행 의 내용,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의 사항을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(생략)	제5조(업무대행 절차) ① ----- ----- <u>경우 사전에 진료</u> ----- -----. ②(개정안과 같음)